

2001년에 개정된 식품영업관련 규정

정부는 금년 들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영업관련 법령 및 각종 고시를 수 차례 제·개정하였으며 식품영업자는 이러한 각종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2001년도에 제·개정된 식품영업 관련 규정의 변동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자료정리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이종덕 차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088호, 2000.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리사의 의무고용대상업소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음식점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음식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00.12. 30)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 (2001. 6.21)

- 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명령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나. 정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병검진 대상자이던 여관업 및 여인숙업여자종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
-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간염이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서 B형간염검사를 제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규정중 의료급여 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7.31)**

-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분·관리를 위
하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에 그 식품이 종자의 구입·생산·
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생산
국의 정부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고, 동증명서를 수입판매
업자로 하여금 2년간 보관하도록 함
- 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을 함께 방문하여 식품접객업 등
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류중 즉석에서 제조·가공
이 가능한 인삼분말류 등 6종류를
포함함(별표 11).
- 라. 모유의 수유를 촉진을 위하여 축산
물가공처리법령에서 조제분유의 광
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유식 등의 광고시 조제분유와 동일
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광
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1-4호, 2001.1.12)**

현행 식품공전의 내용 중 일부 농산
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클로르플루
아주론(Chlorfluazuron)시험법 등을 신
설(2001.4.1 시행)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1-30호, 2001.5.12)**

- 가. 현행 식품공전에서 두부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두(2-4등분
할두포함)로 규정됨에 따라 대두분
은 두부의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두분이 신선
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지 아
니하며 이물 등에 오염되지 아니하
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
도록 보존 및 유통된 것은 두부류
의 제조원료로 사용을 인정
- 나. 전통적으로 제조하여 왔던 두부를
재현하는 등 다양한 두부의 개발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수질등급 1에 적합한 해수는 두부류
제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 다. 조미식품인 된장, 고추장 등의 규격
중 품질관련 규제성 규격인 아미노
질소 규격을 삭제
(시행일 2001.5.12)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개정(식약청고시
제2001-39호, 2001.7.6)**

- 가.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
학적합성품중 398.L-라이신, 399.산

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400.염기성 알루미늄인산나트륨, 나.천연첨가물 중 178.에리스리톨, 179.케르세틴을 신규지정함.

나.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134.식용색소황색제5호, 148.아스파탐, 259.탄산마그네슘, 310.피로인산칼륨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56.메타중아황산칼륨, 66.무수아황산, 95.사카린나트륨, 96.산성아황산나트륨, 152.아황산나트륨, 183.이.디.티.에이.이나트륨, 184.이.디.티.에이.이칼슘나트륨, 233.차아황산나트륨, 333.메타중아황산나트륨, 385.이소프로필알콜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나.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중 5.구아검, 17.렌넷카제인, 18.로커스트콩검, 24.백도토, 28.분말셀룰로오스, 29.비타민 B₁₂, 33.석유왁스, 40.아라비아검, 48.이노시톨, 51.젤라틴, 55.천연카페인, 63.카제인, 69.D-키실로오스, 72.타마린드검, 84.펩신, 91.피틴산, 93.핵산, 99.효모, 103.덱스트라나아제, 104.말토게닉아밀라아제, 105.G4 생성효소, 106.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107.포스포리파아제 A₂, 159.키토사나아제, 175.5'-아데닐산, 177.5'-시티딜산의 정의를 개정하고, 80.파프리카추출색소, 91.피틴산, 104.말토게닉아밀라아제, 159.키토사나아제, 160.스모크향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라.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중 7.규조토, 24.백도토, 27.벤토나이트, 31.산성백토, 75.탈크, 81.퍼라이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마.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다.혼합제제류중 4.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를 개정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식약청고시제2001-43호, 2001.7.9)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주표시면에“유전자재조합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제품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일 2001.7.13)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품청고시제2001-53호, 2001.8.25)

제5의 2. 수산물에 대한 잠정규격 1. 규격 1) 수산물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신설

(4)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서는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음성이어야 한다.(시행일 2001.10.1)

식품의기준 및 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제2001-54호, 2001.8.28)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정의 및 영양성분에 대한 규격 적용을 보완

- 나. 특수영양식품 중 식사대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중 영양소의 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의 유형을 식품종과 구분
- 다. 건강보조식품인 효소식품, 레시틴가공식품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수분규격을 합리적으로 보완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품청 고시제2001-52 호, 2001. 8.24)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 42. α -아밀라아제(세균성)의 정의 및 정량법(역가)중 “*Bacillus stearothermophilus*”를 각각 “*Bacillus stearothermophilus*, *Bacillus stearothermophilus*의 아밀라아제 유전자를 함유한 *Bacillus licheniformis*”로 한다.

98.활성탄중 정의 및 사용기준을 신설 이 품목은 톱밥, 목편, 야자나무껍질의 식물성섬유질이나 아탄 또는 석유 등의 함탄소물질을 탄화시킨 다음 부활화하여 얻어진 것이다.

활성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활성탄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시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중의 잔존량은 0.5% (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탈크 및 퍼라이트 등 다른 불용성광물성 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존량의 합계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법률 제6399호, 2001.1.29)

- 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단체 등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수산물의 경우 그 표시를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산업의 육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함
- 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섞이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단계·가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함

- 마. 정부에서 구매·비축하거나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검사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폐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식용수산물에 대한 병충해검사의 결과 그 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검사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에게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사.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중금속·폐류독소 및 항생물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출하연기·용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대통령령 제17352호,
해양수산부령 제202호, 2001.9.1)**

- 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력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도입한 수산물 표준규격의 표시항목과 표시방법에 관한 사

항을 정함. 표준 규격품의 표시방법은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무게 또는 개수(마리수),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

- 나. 수산물의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의 절차를 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정함.
- 다.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입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국내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 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 마.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신청, 검역절차 및 검역증명서교부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
- 바. 수산물의 품질·성분, 병충해의 감염여부 등의 검정에 필요한 검정절차, 검정항목 및 검정방법 등을 정함.

**수출수산물 검사 대상품목 지정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0호,
2001.6.19)**

수출하는 수산물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함.

수출 대상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홍콩제외)이며 검사 대상품목은 수출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품목임. 다만,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은 제외(시행일 선적일 기준 2001.7.1)

농 립 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20호, 2001.1.4)**

- 1)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용어의 풀이중 정의의 내용일부를 변경하고, 성분배합기준과 유지방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
- 2)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용어의 풀이와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가.우유류중 살균우유의 유통기간을 자율화 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개정하였음.
- 3)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서 결핵균, 탄저균, 부루세라균에 대한 검사기준을 삭제하였음.
- 4)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기준 및 규격의 적용, (4)통·병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6)레토르트가공품의 성분규격 중 세균발육 검사대상을 멸균제품으로 명확히 하였음.
- 5)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원료의 구비 요건, (3)가공기준, (6)보존 및 유통기준을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통합관리하였음.
- 6)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중

원료배합기준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통합하였음.

- 7)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마.산양유의 성분규격중 조지방, 무지유고형분 기준을 개정하였음.
- 8)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아.농축유류에 가공연유의 규격을 신설하였음.
- 9)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차.버터류중 가공버터의 지방함량을 50% 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하였음.
- 10)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카.자연치즈의 성분규격중 대장균군 음성을 대장균 음성으로, 클로스트리디움 음성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보툴리눔 음성으로 변경하였음.
- 11)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더.조제유류, (3)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생산양유 및 산양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 12)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의 성분규격중 대장균군 음성(베이컨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을 대장균군 음성(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O157:H7 음성(원료용분쇄육에 한한다)을 대장균 O157:H7 음성(원료용분쇄육 및 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한다)으로 변경하였음.
- 13)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갈비가공품에서 수분함량을 삭제하였고, 햄류(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제외), 베이컨류에서 조지방함량을 삭제하였으며, 베이컨

류, 갈비가공품에서 육함량을 삭제하였음.

- 14) 제2.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2)원료의 구비요건중 원료알의 보관·관리 조건, (6)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였음.
- 15) 제3.축산물시험방법, II.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4.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5)미생물검사용 검사시료의 취급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사시료의 운반시 냉장보관온도를 명시하고 운반시간을 8시간 이내로 변경하였음.
- 16) 제3.축산물시험방법, IV원유·식육·원료알의 시험법, 1. 원유의 시험법, 나. 이화학적 시험법, (거)가수유 감별시험법, 3)빙점측정에 의한 방법, 가)서미스트빙점측정기법의 ②가수여부 판정중 빙점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230호, 2001.5.29)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동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1차위반시와 2차이상위반시로 구분하여 2차이상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농림부 고시제2001-42호, 2001.6.5)

HACCP적용품목에 포장육을 추가하고 적용시기는 영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종에 따라 적용하며 HACCP적용사업장 지정변경 신청서 및 HACCP적용사업장 표시간판을 추가함.

축산법시행규칙 중 개정(농림부령 제1387호, 2001.6.19)

축산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1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하는 한편, 등급판정대상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일부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신청, 정액처리업의 등록 및 가축인공수정소

의 개설신고 등을 하는 때에 신청인 등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함

- 나.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소사육 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함
- 다. 닭고기의 품질향상 및 개량을 위하여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닭 도체의 등급판정의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
- 라. 축산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추가함

인삼사업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242호, 2001.6.22)

인삼산업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0호)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삼 및 잡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미삼 및 잡삼에 대해서도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산업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인

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로 인삼분말류 및 홍삼분말류 등을 정함

- 나. 미삼 및 잡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던 미삼 및 잡삼에 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함
- 다.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라.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농림부령 제1400호, 2001.10.8)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의 제정(2001. 9. 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으로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 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의 제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함.

환 경 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환경부령 제111호, 2001.7.23)

환경부는 먹는샘물제조업체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샘플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개발하려는 샘플의 용도별로 수질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가. 일반세균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능력이 있는 시 또는 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정함으로써 시·군 보건소의 수질검사와 관련한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먹는샘물제조업체 등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범위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장균군 및 불소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샘물개발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함에 있어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청량음료나 주류를 제조할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중개정 (환경부고시 제2001-15호, 2001.2.6)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내용중 (별표2)먹는샘물의 표시기준 2.표시사항 및 기준 나.개별사항 2)제품명의 나)동일한 취수원의 원수로 제조한 제품에는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함.